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료·먹는샘물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바,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3조)으로써 PET 재활용공정에의 금속 혼입을 막아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원 순환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조자등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서로 분리(금속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몸체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하기 어렵도록 결합(접합 또는 부착 등을 말한다)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조자등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서로 분리(금속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몸체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하기 어렵도록 결합(접합 또는 부착 등을 말한다)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